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8일 / 포항시장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3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4. 11. 22.) 상정 . 질의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강현주 복지정책과장)

가. 개정사유

○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령상 용어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수화”를 “한국수어”로 개정(안 제14조제6호)

다. 관련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정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경희)

-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령상 용어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종합검토 결과

- 안 제14조제6호에 수화를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라 한국수어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